제160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93년2월23일(화) 오후 3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2.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3.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4.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
6.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
7.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8.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9.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 1
6.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3.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김중위 의원 외 21인 발의) ····· 3
4.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김용태 제출) ····· 9
1.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2.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7.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건설위원장 徐廷華 제출) ····· 11
8.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건설위원장 徐廷華 제출) ····· 11
9.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김용태 제출) ····· 12
10.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김용태 제출) ····· 12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14
o 의사진행의 건 ····· 14

(15시13분 개의)

○의장 박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강천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박준규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지금 법사위원회가 방금 끝나 가지고 보고안을 작성 중이라 해서 잠시 뒤로 돌리겠습니다.

되는 대로 상정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도 뒤로 돌릴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 제5항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제5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15시20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5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서울 구로병구 출신이신 김병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오 의원 보건사회위원회 민주당 구로병지구당 김병오 의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1993년 2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하고,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하도록 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 및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로서 등록된 자로 하고,

둘째,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의료보호대상자로 보아 보상을 행하거나 의료보호를 행하도록 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한 진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진료를 행하도록 하며,

셋째,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밝혀내기 위하여 고엽제와 관련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 동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엽제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동 법률안의 유효기간을 1995년 12월 31일에서 1997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보건사회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
(정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규 그러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26분)

○의장 박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부산 영도 출신이신 김형오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오 의원 교통체신위원회 부산 영도 출신 김형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92년 10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3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해운환경의 자율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정부의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해운업계의 자율경영을 유도하고 해운분야에 있어서의 외국과의 마찰요인을 해소하며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법의 제명을 해운업법에서 해운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의 운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운서비스 및 기업경영 개선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율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넷째, 전문해운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대량화물의 화주, 또는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해운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가화물의 운송을 위한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 해운관련업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자율화, 개방화의 세계적 해운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투자를 완전개방, 외국과의 마찰을 방지토록 하였고, 외국인 운송사업자가 국내 해운대리점업에 투자한 경우, 그 해운대리점업 영위자는 당해 외국인 운송사업자가 영위하는 거래에 한하여 대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다른 운송사업자의 거래행위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해운전문인력으로 기존 해무사 외에 장기해상근무자가 육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기관리사제도를 신설하여 선박관리 및 선원노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앞으로 해운업체에서 선박운항과 선박의 유지관리 및 선원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92년 11월 4일 제159회 정기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3년 2월 17일 제160회 국회 제1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이를 계속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 제시한 내항여객운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기로 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도한 운임인상으로 낙도주민 등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제8조는 그 개정을 유보하여야 할 것이라는 일부 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한 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통체신위원회)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규 그러면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3항 4항을 하겠습니다.

3.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김중위 의원 외 21인 발의)

(15시31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서울 마포 갑구 출신이신 박명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환 의원 행정위원회 소속 박명환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2월 13일 김중위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정부체제는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 왔으므로 부처 상호 간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으로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작고 강력한 정부 구현의 지에 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부의 수준으로 존립하기에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여 그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여가생활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하고

둘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를 상공부와 통합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정부조직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될 동 개정법률안은 1993년 2월 18일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김중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2월 20일 제2차 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수정결의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29조제1항 상공부를 에너지 자원의 지속적 확보와 에너지 확보협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공자원부로 그 명칭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둘째, 제35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부에 차관보 1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장차관에 대한 정책보좌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김중위 의원 외 21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전북 군산 출신이신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석 의원 민주당 채영석입니다.

내일모레면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이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취임식 당일 단 50분간의 식을 위해서 지금 식장과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약 5억 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 차기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변화와 개혁을, 그래 가지고 신한국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주장해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기대가 무척 컸습니다. 오랫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하기에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들도 부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고 많은 국민들이 신한국 건설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찬성합니다. 기대하기를 적어도 오랫동안 야당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그리고 9선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신 의회주의자인 차기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언가 큰일을 하고 취임식을 하실 것이다, 적어도 청와대 기구를 축소하고 국민적인 원성이 집중되어 있는, 그동안 공로도 많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라를 망칠지도 모르는 그러한 원망의 표적이 되고 있는 국가안전기획부를 축소하고 제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정부의 예산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팽창된 불요불급한 또 그러한 부처를 통폐합해서 무언가 가시적인 이러한 훌륭한 작은 정부를 종합적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취임식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이 조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그러한 좋은 종합적인 정부기구축소안을 내놓았다면 우리들도 우리 민주당도 이 자리에서 이론이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가지고 경축하는 그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

습니다.

지금 고쳐야 할 악법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과연 문민정부가 출범했구나 하는 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대는 어긋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처음에는 인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적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것, 무엇은 이렇게 축소한다, 무슨 감사원 기능은 확대한다, 예산기능은 청와대로 보낸다, 청와대 기구를 축소한다, 무엇한다, 잔뜩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득권세력의 두꺼운 벽의 저항을 받아 가지고 하나도 가시화시킬 수가 없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이 영도하고 있는 민주자유당조차도 이것을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 선거 때문에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다고 보도는 하고 있지만 손을 못 대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정치담당 보좌관을 불러 가지고 귀에다 대고 소근소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만한 것, 동력자원부하고 체육청소년부하고 이것 좀 표현이 저속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 파리채 가지고 파리 잡는 식으로 이렇게 2개 부처만 딱 없애자 그래 가지고 민자당 의원님들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동자부나 체육청소년부에 근무하던 관계관들의 이야기도 들어 본 일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동력자원부를 없애자, 체육청소년부를 없애자, 동력자원부는 상공부로 붙이고 체육청소년부는 문화부로 붙이자, 처음에는 체육문화청소년부로 하자 이랬다가 또 당무회의에서 시야비야(是也非也) 얘기가 나오니까 문화체육부로 하자, 자, 시비를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첫 작품이니까 그러고저러고 말고 그냥 넘겨주자, 이런 분위기로 넘어와서 국회에 제안되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무언가 개혁을 가시화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졸속하다, 어떻게 1개 부처 2개 부처를 없애는데 만들 때도 신중해야 하거늘 하물며 없앨 때는 더욱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금 얘기는. 언필칭 얘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장관을 임명하고 나면 없애기가 어렵다, 장관을 임명하고 나서 없애기가 어렵다고 하는 정부에 5년 동안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그 정부에게 어떻게 개혁을 기대합니까? 장관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없앨 부서가 있다면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장관이 임명되면 부처를 없애기가 어려워서 장관 임명하기 전에 없애야 하겠다, 이러한 궁색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동력자원부하고 체육청소년부를 잡았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이렇게 지난번에 대정부질문하면서 이 본회의장에 앉아 계시는 많은 민자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은, 소신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없애야 되느냐, 이렇게 졸속하게 해야 되느냐, 종합적인 것을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그러나 표면적으로 말씀을 못 하는 것은 지금 감투가 널려 있어. 이것 혹시 감투나 하나 돌아올까 싶어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거요.

(장내 소란)

그래서 제가 얘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합적인 개정안을 내놓으셔야지 이렇게 졸속해서 이러한 안을 가지고 취임식에 필요하니 이렇게 좀 개정을 해 주어야겠다 하는 얘기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 권능을 위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서 적어도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정부조직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부는 여당만…… 여당은 이제, 내일모레부터 여당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1당이지요. 제1당이나 여당만의 정부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여야가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는 젊었을 시절 언론계에서 또 민주화투쟁을 하면서 또 야당을 하면서 김영삼 차기대통령을 가까이 모셨고 그 어른한테 정치를 배워 왔습니다. 이렇게 이 양반이 어떻든 간에 1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셔서, 저희들 가슴은 비록 아프고 쓰리지만 그

래도 그 결과에 승복하고 대통령취임을 축하해 주어야 할 입장에 첫 작품을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나와서 반대를 한다…… 그것을 그런 심정이 저로서도 무한히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안이 나왔더라면 흔쾌히 우리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개정안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느닷없이 이렇게 졸속하게 나온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흔히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장점 단점을 모두 얘기합니다. 정치감각이 뛰어나시다, 돌파력이 있으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화투쟁을 하시던 김영삼 총재, 또 최루탄 맞으면서 그 고생을 하시던 김영삼 공동의장, 또 오로지 대권을 위해서 그 정면돌파하던 김영삼 대표 이제 대통령 김영삼은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 김영삼은 적어도 정치감각이나 무슨 그러한 것 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여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놓는 법안이 적어도 국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삼 차기대통령은 즐겨 쓰시는 말이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인사는 만사지요. 저는 만사 가운데 9999사를 잘하고 인사 일사를 잘못하면 그 인사는 다 역사 속에 묻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일사를 잘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사를 잘못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일사를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인사문제…… 요즘 청와대 무슨 수석이라고 그럽니다만, 정확한 이름은 대통령 수석비서관입니다. 대통령 수석비서관 이런 문제, 또 말썽을 일으킨 문제, 국무총리가 지금 시다 비다 하는…… 물론 그건 역사가 평가하겠지요. 업적이 평가할 것이고, 그런 문제, 대단히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려면 2개의 부처를 없앤다면 적어도 그 부처에 근무하던 공무원도 그만큼 줄어야 하고 예산도 그만큼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자부하고 체육청소년부를 2개를 없애서 연간 주는 예산이 얼마냐 하면 15억 내지 20억에 불과해요. 사람은 얼마나 주느냐? 장관 두 사람 차관 두 사람 줄어요. 네 사람이 줄어요. 일반직 하나도 줄지 않습니다. 동자부에 2실, 4국, 23과, 2급 담당관이 넷이 있습니다. 상공부에 1실, 9국, 45과, 2급 담당관이 셋이 있습니다. 동자부에 319명, 상공부에 605명, 924명이 여기서 2명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체육청소년부는 2실, 4국, 16과, 4담당, 문화부는 2실, 4국, 19과, 6담당 합치면 문화체육부는 572명. 570명이지요, 2명 줄으니까. 4실, 7국, 25과, 10담당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물어보았더니 대답이 무보직 대기시켰다가 자리 비는 데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낸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줄이려면 예산도 줄이고 인원도 줄여야지, 그것이 작은 정부에 걸맞는 시책 아닙니까? 그저 부처 이름만 둘 없애고, 부처만 둘 없애고 장관 두 사람 차관 두 사람만 없애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작은 정부에 걸맞지 않는다, 물론 국이나 과나 실이나 담당관은 앞으로 정부가 직제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선은 무보직 대기하는 고급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양산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에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동자부는 없애지 말고 체육청소년부는 없애면 합의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의를 했습니다. 동자부만 하더라도 지금 전문가한테 얘기 들으니까 원자력발전소가 8개 있는데 앞으로 8개 더 지어야 한다, 또 2001년부터 적어도 61조 원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 에너지문제가 지금 세계적인 엄청난 각 국가마다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폐기물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저희가 민주당이 종합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다음 161회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행정위원회에서 양해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이 안에 관계되어서 그 대안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자부 없애는 것은 우선 현행대로 놔두고 올가을 정기국회 때 없앤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없애든 없애지 않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하고 체육청소년부 없애는 것은 동의를 하니까 우리가 합의해서 통과시키자 그래서 14대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국회로서 선물도 하나 드리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자당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완강히 거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수정안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아까 제안설명으로 말씀을 드린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한 부를 없애면서 어떻게 이름마저 깡그리 없앱니까? 그래서 상공자원부…… 모두 우리 행정위원들이 합의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또 문화체육부도 문화청소년부로 해 달라, 체육보다는 청소년, 체육 하면 어쩐지 조금 그런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으니 우리가 자식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뜻에서라도 청소년부라도 해서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또 이 나라를 걸머지고 갈 동량을 기르기 위한, 우리 후대들을 기르기 위한 청소년문제를 우리 국회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국민적 관심사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발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청소년부로 해 달라 해도 그것도 민자당의 원안은 문화청소년부였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로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뜻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문화체육부의 문화 체육 담당하는 차관보 하나라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상공자원부에는 상공부에 기왕에 1차관보 2차관보 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원담당차관보를 두어서 세 사람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에다가도 체육청소년담당차관보를 하나 두자, 그것도 사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다 합의를 해서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저간의 경위를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의사국장께서 간곡히 20분에 끝내 달라고 해서 20분에 끝내려고 합니다.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경청하는 태도가 대단히 좋으시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계속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고 부처를 없애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대표기관인 국회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14대 대통령 취임 이틀 전에 첫 작품을 이렇게 찬성해 드리지 못하고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게 된 저의 소회가 대단히 착잡하다는 말씀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존경하는 조용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직 의원 채영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 반대의 입장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상당한 시간 할애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서 옥신각신 끝에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여야 간에 상당한 부분이 합의된 가운데 야당이 퇴장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이 없는 가운데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서 11 대 2라는 그런 결과로 통과를 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영석 의원 자신이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상공자원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여야가 물론 합의했습니다.

문화체육부에 청소년체육부 쪽의 의견들이 나름대로 기능적으로 활발하게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차관보를 하나 두는 것이 좋겠다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한 가운데에 결국 반대가 2표가 나왔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면서 제가 왜 이 안을 찬성하는가를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조용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민주당의 존경하는 채영석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찬성하는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만한 정부조직의 효율적인 개편 없이는 새 정부가 구상하는 작은 정부나 국제화 자율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0년대의 미래행정수요와 행정의 국제화·정보화·과학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간소하고도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조정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검토를 함과 더불어서 여론수렴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종합대상부처를 선정하는 문제는 우선 지난 88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전 국무총리 신현확 위원장께서 위원장이 되셨던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연구·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대상을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안을 찾아본 것입니다.

그동안 학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설치 당시에는 특수현황을 고려하여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어 존치필요성이 감소되었고 기구나 기능이 부의 수준으로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 고려되었으며, 또한 다른 부처와 기능상 관련성이 적어서 최소한도 지금 당장 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처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부처를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동력자원부는 당초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으로 설치 당시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어 그동안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건의한바 또한 국내시장의 개방 급격한 세계무역질서의 개편 등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내산업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 간의 연계성 확보가 시급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무역확대 및 에너지 기술이양을 둘러싼 국제협력활동의 증대 등으로 통상·국제협력정책과 에너지정책 간의 인계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이 통상정책 산업정책과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부는 당초 '88서울올림픽이라는 특정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부서로서 올림픽 후 폐지를 전제로 설치되어 '88년 올림픽 이후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업무량 미흡으로 그동안 학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체육행정은 국민여가생활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과거의 체육엘리트 양성중심에서 생활체육 사회체육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청소년행정의 많은 부분이 문화행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보호·육성업무의 효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행정과 연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육·청소년행정과 문화행정을 통합·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조직법의 전반적인 개편은 시간을 가지고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을 마련해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부조직개편은 그동안 국민여론 등을 통해서 통폐합에 대하여 충분히 그 공감대가 형성된 일부부처를 간소한 정부 구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할 뿐만 아니라 행개위 검토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행개위가 건의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에 대한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대해 각별한 이해와 성원을 드리는 의미에서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그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준규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분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사가 지나가거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곧 집계가 끝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명 중 가 164명, 부 58명, 기권 5명으로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4.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김용태 제출)

(16시08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지금 방금 채택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따라가는 국회조직의 개편안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경북 안동 출신이신 김길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홍 의원 운영위원회의 김길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체육청소년부와 동력자원부가 폐지되고 문화체육부와 상공자원부에 각각 그 사무가 승계됨에 따라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수와 명칭 및 그 소관사항 일부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력자원위원회를 폐지하여 상임위원회 수를 현행 17개에서 16개로 조정하고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상공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상공자원위원회로 하여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안을, 문화체육공보위원회는 문화체육부 및 공보처 소관에 속하는 사안을, 상공자원위원회는 상공자원에 속하는 사안을 각각 그 소관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번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었으며 명칭이 변경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종전의 위원 및 위원장이 승계하도록 경과조치조항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준규 그러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표결사가 지나가거든 자동적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가 164인, 부 55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13분)

○의장 박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북 영천 출신이신 박헌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기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박헌기 의원입니다.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과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2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고등검찰관 직급을 폐지하였는바 그 이유는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은 처우의 기준인 호봉

체계가 동일하고 법원의 경우 종전에는 고등법원 판사를 지방법원 판사보다 수당 등의 처우 면에서 우대함으로써 사실상의 승진제도로 운영하였던 것을 93년부터는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 간의 차별을 폐지하였으므로 검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검사의 직급제도를 법관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직급 중 고등검찰관과 검찰관을 검사로 통일하는 것이며, 둘째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 중 기술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7일 제160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호사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변호사징계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폭 이관하고,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현행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에 의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제도를 변호사법에 흡수 통합하고, 사건알선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법조공익기능을 높임과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첫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변호사의 개업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현재 법무법인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동일한 공증사무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근거법률이 변호사법과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혼선이 야기되어 있으므로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을 폐지하는 대신 변호사법에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구성원 자격 업무집행방법 등에 있어서 상호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며

셋째, 현재는 법무부에 설치된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징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반적인 징계사건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안이 비교적 중한 징계사건과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만 관장하도록 변호사 징계절차를 이원화하며

넷째, 업무정지명령의 요건인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므로 이를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결과 등록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익을 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그 요건을 한정하고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는 반드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등 업무정지명령의 요건 절차 기간 불복방법 해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다섯째, 법조주변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특정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금품수수에 관한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993년 2월 17일 제16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을 입법에 반영하고 변호사징계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폭 이관하여 변호사 자치의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법조주변 부조리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이므로 원안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체계와 형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제5항을 신설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 반드시 그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데 대하여 현행 규정에 의하더라도 구성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지 아니하면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의무규정의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이 두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규 그러면 먼저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항부터 6항은 끝나고 7·8항에 들어가겠습니다.

---

7.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건설위원장 徐廷華 제출)

8.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건설위원장 徐廷華 제출)

(16시23분)

○의장 박준규 의안일정 제7항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과 제8항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충남 서천 출신인 이긍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긍규 의원 건설위원회 이긍규 의원입니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2월 18일 제160회 국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이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동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택의 투기방지와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주택조합원의 자격 등을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외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게 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2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11월 2일 제159회 국회 제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1993년 2월 19일 제160회 국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수의 증가 및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도로교통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도로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건설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로시설물의 관리를 강화하여 도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는 등 도로의 관리·운용에 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의 결정을 한 경우에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을 현재의 하천 점용허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등 7종 외에 도시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 9종의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로건설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운행제한의 대상에 중기도 포함하도록 하여 차의 운행으로 인한 통행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자동차 전용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등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시설의 연결자로 하여금 교통의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넷째,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부속물에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를 추가하고, 도로점용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두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건설위원장)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규 그러면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은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항 외에 의결정족수가 필요하니까 15분만 기다려 주세요.

9.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김용태 제출)

(16시27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9항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전남 여수 출신이신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김충조 의원입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각종 선거관련법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의 발전에 발맞추어 국회 차원에서도 정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 각종 선거관련법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성숙되고 진일보한 선거제도를 정립하는 한편 각종 정치관계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8월 및 10월 양차에 걸쳐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는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통과한 바 있으나 논의과정에서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논의대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이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지난번에 합의되지 못한 부분을 포함하여 정치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그 설치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성호 의원, 채영석 의원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이 결의안을 제2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규 그러면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전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김용태 제출)

(16시31분)

○의장 박준규 의사일정 제10항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서울 마포을구 출신이신 박

주천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천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박주천 의원입니다.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회의원 배지는 그동안 국회의 고유한 상징으로 기능하여 왔습니다마는 일각에서 그 크기 등이 다소 무거운 인상을 풍긴다라는 의견 등 수차례 제기된 바 있어서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상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행 국회의원 배지의 모형과 크기를 변경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국회의원 배지의 크기를 약간 축소하되 부드러운 느낌을 갖도록 그 형상을 개선하고

둘째,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회공무원배지에 관한규정을 수정해서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규칙의 적실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국회운영위원장)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규 그러면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사국장한테 들었는데 무소속의 원광호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3분만 하시겠답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원광호 의원 무소속 원주 출신 원광호입니다.

우선 먼저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이유 설명에 보면 '현행 국회의원 배지의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없애고……' 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의 권위주의적인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의원 배지와 국회의원 배지가 구분이 안 되니 국회의원 권위가 없어졌다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의원의 상징성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도안을 보면 무궁화를 원으로 싸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궁은 무궁무진한 한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원으로 묶여진 것은 제한된 구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색깔 면에 있어서 자색을 쓰는데 자색은 친밀감커녕 국민에게 오히려 신뢰감이 아니 적색을 우리는 멀리하는 국민적 습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색깔론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표기하기로 48년 제정·공포한 이래 45년이 되는 '93년 오늘에 이르러 우리는 아직까지도 본회의장에 이름패가 한글이 아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92년 5월 20일 자로 국회운영위원회에 한글 이름패 사용을 청원한 바 있고, 또 의원 여러분에게 설문을 조사한바 86%가 한글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은 아직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권위의식에서 상식 이하의 배지와 기를 바꾸자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반대하는 것이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되는 것을 반대토론으로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국회배지가 다섯 번이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금색깔이라고 하는 그것이지 내용은 다섯 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때는 본회의의 결의가 없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모두 본회의 결의까지 하는데 붙이고 싶은 사람은 붙이고 안 붙이고 싶은 사람은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한글 문제는 모두 다 두고두고 신중히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하고 원 의원 양해를 해 주시고 원 의원이 반대하신 것으로 하고 다른 분은 이의 없는 것으로 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33분)

○의장 박준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4일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o 의사진행의 건

(16시35분)

○의장 박준규 그리고 민주당의 손세일 의원님께서 모두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해박하신 학식을 가졌기 때문에 모두 경청을 한번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일 의원 손세일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에 제가 긴급동의로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현행 국회법상 긴급동의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식으로 의장께서 의안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임기 이틀을 남겨 놓았습니다. 임기를 남겨 놓은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저기 고별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현재 오늘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해서 발매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문예춘추지와의 회견내용은 이것은 국민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대한 논평이 가령 토요일 문화일보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연극 가운데 하나의 배역일 수도 있다. 일본의 연극단체 사계의 대표 아사리 게이타 씨가 한국의 청와대를 방문하여 노 대통령과 가진 회견기사에는 노태우 씨의 매우 잘못된 연기의 여러 장면이 들어 있다. 퇴장시각이 가까워옴을 알리는 조명 속에 거침없이 탄로되는 노태우 씨의 백지와도 같은 센티멘털리즘! 그의 대통령 역은 과거 5년 전 기간이 소름끼치는 미스캐스팅이었다고까지 생각하게 된 관객 수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도 요긴한 것으로 손꼽는 플롯이라는 연극요소가 우리 남북 7천만 인구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한국이란 제목의 사극에서……'

○의장 박준규 손 의원! 우리 국회법에 잡지 인용이 안 됩니다. 인쇄물 인용이 안 됩니다.

○손세일 의원 예.

'통째로 망가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의장 박준규 손 의원!

○손세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평을 받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노 대통령이 이 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감정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대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솔직하게 과거를 잘못했다고 했었더라면 이것이 역사 속에 파묻혔을 텐데 일본 언론이 공연히 이것을 들추어내 가지고 한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또 그것을 한국 국민의 격분을, 한국 언론이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마치 지금 세계적으로 인권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대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한일 양국의 언론의 말하자면 상업주의에 의해서 공연한 불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뜻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용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직접 인용은 안 합니다마는 한국경제성장에 있어서 일본이 공헌한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언젠가 시간이 가면 우리 지식인들도 한국경제 부흥에 일본인이 한 아주 큰 역할을 차차 알게 될 것이다 등등의 도저히 현재 한일 관계에서 문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좌우명이 일본의 일본사회에서 전통적인 풍습인 도덕인 '기리닌조'라고 의리와 인정이 자기의 좌우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

질 수 있었던 것이 만일 있었다면 이러한 일본의 일본인들의 그러한 미덕을 자기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애기를 합니다.

또한 월남전에 파병되어 가지고는 정글 속에서 촛불을 켜 놓고 일본작가의 소설을 읽었다는 그런 식인 대담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서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현재의 한일 관계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이것은 우리 마지막 아무리 임기 이틀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지만 그냥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저는 우리 국회가…… 국회의장께서 특별히 의제로서 노태우 대통령의 대일굴욕발언 해명과 대국민사과 촉구 결의안을 각당 대표와 함께 상의하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숙의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제가 지금 인용을 하면 여러분께서 깜짝 놀랄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대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런 기사를 읽은…… 이 잡지가 일본에서 가장 부수가 많은 잡지입니다. 이 기사를 읽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오늘 이 새로운 문민정부가 탄생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국회로서 할 일을 마무리를 단단히 정확하게 책임 있게 해야 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규 존경하는 손세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의사진행에 관계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양식에 맡기기로 하고 이다음에 국회법 개정 때 의사진행이 원만한 법을 지키는 그러한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취임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본회의장에 들어오셔 가지고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 의원 수(234인)

○출석 정부위원

법무부차관	조 성 욱
건설부차관	이 상 룡
교통부차관	장 상 현

【보고사항】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통일국민당

송영진 이학원 이호정 정태영

(2월 16일 자)

차수명

(2월 17일 자)

김범명 원광호

(2월 18일 자)

정주영 정몽준 정장현 최영한

(2월 19일 자)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김진영	문화공보	상 공	통일국민당

(2월 17일 자)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한광옥	행 정	내 무	민 주 당
김충조	내 무	행 정	민 주 당

(2월 18일 자)

○의안 제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2월 19일 이영권 의원 외 94인 발의)

발의자 이영권

찬성자 강수림 강창성 강철선
강희찬 국종남 권노갑
김덕규 김말용 김명규
김병오 김봉호 김상현
김영배 김영진 김옥두
김옥천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인곤 김장곤
김종완 김충조 김충현
김태식 나병선 남궁진
유인태 류인학 유준상
문희상 박계동 박광태
박상천 박석무 박 실
박은태 박 일 박정훈
박지원 박태영 손세일
신계륜 신기하 신순범

신진욱 안동선 양문희
오 탄 원혜영 이경재
이규택 이기택 이길재
이동근 이부영 이석현
이우정 이원형 이윤수
이장희 이 철 이해찬
이 협 이희천 임복진
임채정 장기욱 장석화
장영달 장재식 장준익
정균환 정기호 정대철
정상용 제정구 조세형
조순승 조순형 조윤형
조홍규 채영석 최두환
최락도 최재승 하근수
한광옥 한화갑 허경만
홍기훈 홍사덕 홍영기
황의성

2월 19일 행정위원회에 회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2월 19일 조홍규·김덕규·신진욱·이기택·조세형 의원 외 90인 발의)

발의자 조홍규 김덕규 신진욱
이기택 조세형
찬성자 강수림 강창성 강철선
강희찬 국종남 권노갑
김말용 김명규 김병오
김봉호 김상현 김영배
김영진 김옥두 김옥천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인곤 김장곤 김종완
김충조 김충현 김태식
나병선 남궁진 유인태
류인학 유준상 문희상
박계동 박광태 박상천
박석무 박 실 박은태
박 일 박정훈 박지원
박태영 손세일 신계륜
신기하 신순범 안동선
양문희 오 탄 원혜영
이경재 이규택 이길재
이동근 이부영 이석현
이영권 이우정 이원형
이윤수 이장희 이 철
이해찬 이 협 이희천
임복진 임채정 장기욱
장석화 장영달 장재식
장준익 정균환 정기호
정대철 정상용 제정구
조순승 조순형 조윤형
채영석 최두환 최락도
최재승 하근수 한광옥
한화갑 허경만 홍기훈
홍사덕 홍영기 황의성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2월 19일 박상천·이원형·이철·채영석·김명규 의원 외 90인 발의)

발의자 박상천 이원형 이 철
채영석 김명규
찬성자 강수림 강창성 강철선
강희찬 국종남 권노갑
김덕규 김말용 김병오
김봉호 김상현 김영배
김영진 김옥두 김옥천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인곤 김장곤 김종완
김충조 김충현 김태식
나병선 남궁진 유인태
류인학 유준상 문희상
박계동 박광태 박석무
박 실 박은태 박 일
박정훈 박지원 박태영
손세일 신계륜 신기하
신순범 신진욱 안동선
양문희 오 탄 원혜영
이경재 이규택 이기택
이길재 이동근 이부영
이석현 이영권 이우정
이윤수 이장희 이해찬
이 협 이희천 임복진
임채정 장기욱 장석화
장영달 장재식 장준익
정균환 정기호 정대철
정상용 제정구 조세형
조순승 조순형 조윤형
조홍규 최두환 최락도
최재승 하근수 한광옥

한화갑 허경만 홍기훈
홍사덕 홍영기 황의성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공직선거의동시실시에관한특례법안

(이상 4건 2월 19일 박상천·조순승·이원형·나병선·강수림·김충현 의원 외 89인 발의)

발의자 박상천 조순승 이원형
나병선 강수림 김충현
찬성자 강창성 강철선 강희찬
국종남 권노갑 김덕규
김말용 김명규 김병오
김봉호 김상현 김영배
김영진 김옥두 김옥천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인곤 김장곤 김종완
김충조 김태식 남궁진
유인태 류인학 유준상
문희상 박계동 박광태
박석무 박 실 박은태
박 일 박정훈 박지원
박태영 손세일 신계륜
신기하 신순범 신진욱
안동선 양문희 오 탄
원혜영 이경재 이규택
이기택 이길재 이동근
이부영 이석현 이영권
이우정 이윤수 이장희
이 철 이해찬 이 협
이희천 임복진 임채정
장기욱 장석화 장영달
장재식 장준익 정균환
정기호 정대철 정상용
제정구 조세형 조순형
조윤형 조홍규 채영석
최두환 최락도 최재승
하근수 한광옥 한화갑
허경만 홍기훈 홍사덕
홍영기 황의성

이상 4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임시우편단속법 폐지법률안

(2월 19일 정상용·김명규·김영배·이윤수·정균환·한화갑·황의성 의원 외 88인 발의)

발의자 정상용 김명규 김영배
이윤수 정균환 한화갑
황의성
찬성자 강수림 강창성 강철선
강희찬 국종남 권노갑
김덕규 김말용 김병오
김봉호 김상현 김영진
김옥두 김옥천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인곤
김장곤 김종완 김충조
김충현 김태식 나병선
남궁진 유인태 류인학
유준상 문희상 박계동
박광태 박상천 박석무
박 실 박은태 박 일
박정훈 박지원 박태영
손세일 신계륜 신기하
신순범 신진욱 안동선
양문희 오 탄 원혜영
이경재 이규택 이기택
이길재 이동근 이부영
이석현 이영권 이우정
이원형 이장희 이 철
이해찬 이 협 이희천
임복진 임채정 장기욱
장석화 장영달 장재식
장준익 정기호 정대철
제정구 조세형 조순승
조순형 조윤형 조홍규
채영석 최두환 최락도
최재승 하근수 한광옥
허경만 홍기훈 홍사덕
홍영기

교통체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직자윤리법 중 개정법률안

(2월 19일 박상천·신순범·한광옥·이영권·김충현 의원 외 90인 발의)

발의자 박상천 신순범 한광옥
이영권 김충현
찬성자 강수림 강창성 강철선
강희찬 국종남 권노갑
김덕규 김말용 김명규

김병오 김봉호 김상현
김영배 김영진 김옥두
김옥천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인곤 김장곤
김종완 김충조 김태식
나병선 남궁진 유인태
류인학 유준상 문희상
박계동 박광태 박석무
박 실 박은태 박 일
박정훈 박지원 박태영
손세일 신계륜 신기하
신진욱 안동선 양문희
오 탄 원혜영 이경재
이규택 이기택 이길재
이동근 이부영 이석현
이우정 이원형 이윤수
이장희 이 철 이해찬
이 협 이희천 임복진
임채정 장기욱 장석화
장영달 장재식 장준익
정균환 정기호 정대철
정상용 제정구 조세형
조순승 조순형 조윤형
조홍규 채영석 최두환
최락도 최재승 하근수
한화갑 허경만 홍기훈
홍사덕 홍영기 황의성

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안

(2월 19일 정부 제출)

2월 19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 회부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2월 20일 건설위원장 徐廷華 제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 2월 23일 국회운영위원장 김용태 제출)

○의안 심사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2월 15일 정부 제출)

2월 20일 법제사법위원장 현경대 보고

원안대로 의결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1992년 10월 19일 정부 제출)

2월 23일 건설위원장 徐廷華 보고

해운업법 중 개정법률안

(1992년 10월 29일 정부 제출)

2월 20일 교통체신위원장 양정규 보고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

(1월 26일 정부 제출)

2월 20일 법제사법위원장 현경대 보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

(2월 12일 정부 제출)

2월 23일 보건사회위원장 장기욱 보고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2월 13일 김중위 의원 외 21인 발의)

2월 23일 행정위원장 윤영탁 보고

이상 5건 수정 의결

○청원 제출

인영·필적 등의 감정과 감정사의 자격 법제화 등에 관한 청원

(2월 17일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132-1 김선월 외 11인으로부터 강수림 의원 외 63인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법원의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인영·필적의 감정업무 및 감정사에 대한 자격을 법규화하여 이와 관련된 국민의 부당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의 허위감정으로 인한 피해사건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찰의 엄중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임

2. 인영·필적 등 감정업무는 대부분 법원의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현재 경찰산하 국립수사연구소와 법원의 인가를 받은 사설법정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의 허위감정으로 인하여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인영·필적의 감정과 관련된 입법 및 감정사의 기능과 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을 실시하여 감정업무의 공적신뢰를 높여 국민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1992. 9. 26. 허위감정과 관련하여 검찰이 접수한 일련의 고소 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임

소개의원 : 제정구 곽영달 박 실
최락도 조순승 이우정
오 탄 이동근 이장희
한화갑 이경재 류인학

정몽준 김효영 이승무
남평우 민태구 박석무
신계륜 송광호 조홍규
장재식 정대철 김옥천
김원기 임채정 김말용
이강두 문창모 이기택
황의성 박주천 이해찬
김옥두 이석현 이웅희
김두섭 조일현 김덕룡
박태영 김장곤 홍기훈
김원웅 이원형 장영달
문정수 박은태 박 일
배명국 이만섭 문희상
김인곤 이건영 한영수
정기호 이길재 강재섭
이순재 이부영 조윤형
허경만 강철선 정장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종교전문학교 법제화에 관한 청원

(2월 1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4동 875-7(하바드오피스텔 502호 윤이흠으로부터 이해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종교인구의 증가에 따라 각 종교단체가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설 종교교육기관이 불법으로 규정, 단속되고 있는바 교육법에 이들 종교교육기관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존의 무인가 종교교육시설을 양성화하여 합법적 종교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하자는 내용임
2. 국민의 과반수를 넘어설 만큼 종교인구가 증가하고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교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현재 기독교의 경우 신학교가 300여 개, 불교의 강원 및 선원이 200여 개, 유교의 향교가 200여 개 기타 종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법상 종교교육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교육기관에 대해 불법·무인가시설이라는 이유로 단속이 행해지고 있는바 현행 교육법에 나와 있는 학교의 종류에 종교전문학교를 추가하고 이의 설립·운영·학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법적으로 이들을 양성화해 주기 바라는 청원임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청원

(2월 1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84번지 학교법인 봉덕학원 이봉덕으로부터 박범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인천앞바다 공유수면매립 간척지 380만 평은 당초 학교법인 봉덕학원이 농림부의 매립면허를 받아 착공한 공사이나 부당하고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해 동아건설주식회사로 그 소유권이 넘어간바 동아건설에 대한 특혜여부를 밝히고 총매립지 중 봉덕학원이 매립한 땅 50만 평에 대한 소유권 인정을 바라는 내용임
2. 인천직할시 북구 원창동·경서동 소재 인천앞바다 공유수면을 1964년 청원인 학교법인 봉덕학원이 수산증식용으로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매립에 들어갔으나 준공을 앞둔 1970년 건설부가 공업단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추가공사를 지시하므로 대한준설공사와 합작하여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대한준설공사의 주식회사 전환으로 인하여 공사완공을 못 하여 동 매립면허가 취소되고 1980년 당초 봉덕학원에게 요구되었던 조건의 이행 없이 동아건설주식회사가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농업용지로 매립면허를 획득한 사실을 알게 된바 이에 대한 특혜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인 점을 감안하여 총매립지 380만 평 중 봉덕학원이 매립한 문점도 앞 30만 평과 방조제 20만 평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을 바라는 청원임

농림수산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방송법 개정에 관한 청원

(2월 1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호 한국기계진흥회관 신관2층 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방송선교회 김석주 외 4200인으로부터 박명환 의원 외 98인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것이므로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된 종교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이나 상업방송이라 할지라도 선교를 목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제5조제3항을 개정해 주기 바라는 내용임

2. 실업인선교연합회 방송선교회가 1979년부터 1992년까지 전국 18개 MBC-TV 방송사를 통하여 방영한 바 있는 기독교선교프로그램 '행복으로의 초대'가 방송법 제5조제3항 후단의 '……다만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이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에 의거해 공영방송은 선교를 목적으로 방송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방송위원회의 방영중지처분을 받은바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과 선교방송이 인간성 회복과 도덕성 회복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종교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이나 상업방송이라 할지라도 선교를 목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개정해 주기 바라는 청원임

소개의원 : 박세직 박우병 심정구
김한규 노승우 이규택
오장섭 김효영 차수명
조순승 이강두 문창모
백남치 강신옥 김충조
서청원 김영광 정필근
곽영달 남평우 박헌기
이긍규 이순재 강신조
신순범 박제상 이명박
김동길 최락도 김명규
박주천 유준상 이윤수
박경수 이상재 정기호
김충현 김영배 김덕룡
박지원 이택석 임춘원
유수호 양창식 안찬희
안무혁 노인도 최상용
김운환 윤태균 이환의
구천서 송천영 오 탄
이현수 박근호 노재봉
김광수 성무용 이종근
황명수 신상우 이기택
문희상 박 실 이동근
장영철 이승무 서수종
박범진 황윤기 김병오
류인학 이석현 조일현
김정수 최형우 강선영
임채정 김말용 류승규
이재환 정석모 이해구
임사빈 조홍규 강창성
한영수 강우혁 김인영
주양자 정순덕 김진영
강용식 김범명 정창현
이만섭 박찬종

2월 19일 문화공보위원회에 회부.

고창남당삽혈동맹단 성역화에 관한 청원

(2월 22일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운양리 신사범 외 400인으로부터 정균환 의원 외 15인의 소개로 제출)

요지

1. 임진·정유년 왜침에 항거하기 위하여 채홍국 대장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던 호남홍성삽혈동맹 92인과 정유동맹 36인을 합한 127인의 의병을 추모하고 향후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진원지인 고창남당삽혈동맹단을 성역화하고 이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자는 내용임

2. 임진왜란 발발 때부터 왜침에 항거하던 의병들 92인이 의병장 채홍국을 중심으로 회동하여 백마혈을 돌려 마시고 조직한 것이 호남홍성삽혈동맹단이고 정유재란 때 다시 채장군을 중심으로 36인이 동맹하여 의병봉기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인바, '전라북도문화재지'가 이를 잘못 고증하여 '호남홍성삽혈동맹단'을 백제시대 고분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위 127인을 추모하고 그 얼을 기리기 위해 의병의 진원지였던 고창남당삽혈동맹단 일대를 성역화하고 다음과 같은 기념사업을 추진하자는 청원임

○채홍국 삽혈동맹총사에게 내린 교지와 당시의 육필실기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양란당시 순국한 127인의 사당인 모충사의 부속건물을 증축할 것.

○의병 창의 시의 창의소 칼 화살 무기 대장간 연병장을 복원할 것.

○성지에서 출현한 유물을 모아 기념관을 건립하고 유사를 책으로 발간할 것.

○삽혈동맹단 일대 의사들이 전사한 곳곳에 사적비를 세울 것.

○당시 의병들이 읊은 시와 삽혈노래 등을 공모·제정·보급할 것.

소개의원 : 황의성 이영권 유인태
문희상 류인학 이경재
임채정 신순범 박석무

김영진 김인곤 이희천
강철선 김병오 이동근
문화공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

쌀수입개방 관련 발언에 관한 질문서

(2월 19일 정태영 의원 제출)

2월 23일 정부에 이송

○서면답변서 제출

일산신도시 건설계획 중 호수공원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토지거래허가 후 사후관리실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재러시아 한인문제 및 세계인권회의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3건 2월 15일 정부 제출)

제14대 대통령선거 관련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월 16일 정부 제출)

'92국정감사 지적사항과 종합유선방송 및 불교방송국 허가현황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월 18일 정부 제출)

한국도로공사의 설날귀성안내광고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건영조합아파트 특혜의혹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월 19일 정부 제출)

(이상 7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에 실음)

○보고서

199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

199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아래 일자에 각각 제출되었음

국회사무처 1993년 2월 15일

국회도서관 1992년 12월 29일

환경처·대통령비서실·국가보훈처·통일원·체신부·비상기획위원회·노동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무총리행정조정실·농림수산부·보건사회부·외무부·문화부·정무(2)장관실·감사원·공보처·정무(1)장관실·경제기획원·상공부·건설부·법무부·법제처·체육청소년부·국가안전기획부·과학기술처·교통부·대통령경호실·총무처·동력자원부·국방부·내무부·재무부·교육부

이상 33개 기관 1993년 2월 15일